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87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이용우·모경종·진선미

민병덕 • 김한규 • 김교흥

박정현 • 박주민 • 백승아

이워택 • 백혜려 의워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지 않았음.

설사 국회가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 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 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 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통고받거나 집회를 요구받은 경우에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를 개의 또는 집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②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통고받거나 집회를 요구받은
	경우에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를 개의 또는 집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
	회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같다.